

##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
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유료도로법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도로의 종류 및 구간 : 고속국도(제130호),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(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~경기도 고양시 강매동)
2. 통행료 수납자 : 신공항하이웨이(주)
3. 주요구간 통행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현 행	조 정
인천공항영업소	경 차	3,300	1,600
	소 형	6,600	3,200
	중 형	11,300	5,500
	대 형	14,600	7,100
북인천영업소	경 차	1,600	950
	소 형	3,200	1,900
	중 형	5,500	3,200
	대 형	7,100	4,200
청라영업소	경 차	1,250	1,000
	소 형	2,500	2,000
	중 형	4,200	3,500
	대 형	5,500	4,500

4. 통행료 수납기간 : 2023년 10월 1일 ~ 2030년 12월 31일

\* 변경된 통행료는 2023년 10월 1일(일) 00시부터 적용

5. 통행료 납부대상 :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

6. 통행료 감면대상

-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
-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

7. 통행료 수납방법 : 요금소 통과시 현금, 선불·후불 하이패스카드, 전국호환 교통카드,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